



대학평의원회 회의록(05)

일 시 : 2017년 01월 26(목) 15시

장 소 :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

참석 위원 : 조치웅(위원장), 김영상(서기), 김영안, 김현희, 오복자, 이준태, 장성일

불참 위원 : 위경수, 조석호, 최준환

첫 기 도 : 조치웅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회

위원장이 교수대표(4명), 직원대표(3명), 학생대표(1명) 등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회의개최 성원이 됨에 따라 제5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함.

위 원 장 : 금일에 회의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

안건 1. 학칙변경(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안)

안건 2. 학칙변경(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안)

안건 3. 학칙변경(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안)

안건 4. 학칙신설(안)

위 원 장: 먼저 학칙개정 및 신설의 시급함으로 인해 부득이 긴급 회의소집을 할 수 밖에 없음에 대한 양해를 구함

위원 ○○○: 회의 안건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안건 1, 2와 안건 3, 4)은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기를 제안함

위 원 장: 본 제안에 대해 전체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전체위원: 전체적으로 동의

위 원 장: 위원 ○○○의 제안과 전체위원의 동의로, 안건 1,2 와 안건 3,4를 하나로 묶어 안건심의하기로 함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및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자문

위 원 장: 대학원 및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자문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대학원 교학팀장에게 주요내용 설명을 요청함.

교학팀장: 대학원 및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함.

1) 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 대학원 신설 및 학과명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재학생들의 소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부칙 추가
-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외국어시험 점수 변경(외국인 유학생 표준업무지침에 명시된 점수와 동일하게 변경)

2)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 보건복지대학원에서 임상간호대학원으로 대학원명 변경되고 단일 학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학칙 정정

위원 ○○○: 현재 ‘보건바이오융합학과’ 학생은 몇 명 남아있고 학생들의 동의는 구할 수 있는가?

교학팀장: 남아있는 학생은 박사 4명, 석사 1명이며, 학생들의 동의서를 다 받았음.

위원 ○○○: 보건복지대학원 소속 보건학과 재학생은 보건학과가 폐과되더라도 학적은 보건학과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학칙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현재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비록 학과가 사라졌지만, 수료후 향후 어느시점이라도 졸업요건이 되어 졸업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로 졸업증명서가 발급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느정도 되는가?

교학팀장: 교수님 말씀이 맞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12명이고, 이들은 수료 후 나중에 졸업할 경우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로 졸업하게 되는 것임

위 원 장: 다른 이의가 없으면 안건 1, 2(대학원 및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자문)에 대해 거수로 가부 여부를 표해주기를 요청함

전체 위원: 거수함

위 원 장: 본 안건 1, 2에 대해 별 위원들의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및 학칙 신설(안) 자문

위 원 장: 안건 3.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및 안건 4. 학칙 신설(안) 자문에 대해 안건 상정하고, 안건내용에 대해 교수지원팀장에 설명을 요청함.

교수지원팀장: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및 학칙 신설(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함.

1)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 조직개편에 따른 부속기관 및 변경

- 휴업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인 문제와 휴업일 수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휴업일 및 휴업일 강좌 개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학칙 신설(안)에 따른 관련 학칙 내용 보완 수정
- 학점 취득 및 수강신청(재수강 내용), 강좌 폐강 관련 학칙 시행세칙 개정
- 복수 전공 과목 학점 관련 개정
- 채플 및 출석 점검, 졸업 요건 관련 타 학칙과 일원화된 졸업요건 개정
- 학과 간 전과 관련 현 상황에 맞춘 용어 수정

2) 학칙 신설(안)

- 최근 정부정책에 발맞추고 대학의 유연한 학사관리를 위해 다음의 학칙 신설하고자 함

- | | |
|-------------------|------------------------|
| ① 연계전공운영지침(안) | ④ MOOC운영시행세칙(안) |
| ② 융합(공유)전공운영지침(안) | ⑤ K-MOOC 강좌 특별학점인정제(안) |
| ③ 온라인강좌운영규정(안) | ⑥ 졸업유예운영규정(안) |

- 주요요지: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강화

오픈 캠퍼스 활성화 및 졸업유예운영 규정 등을 통한 유연한 학사관리 체계 마련
위원 ○○○: 정기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움. 혹시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교수지원팀장: 정기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임

위원 ○○○: 우리대학교에 보육교사 교육원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대학학칙에 구지 보육교사교육원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지 않는가? 여기에 넣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교수지원팀장: 보육교사교육원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제에 누락되어 신설로 넣었으며, 교육원을 폐지신청을 하지 않은 한 직제로 두어야 하여 금번 개편에 반영함

위원 ○○○: 4학년 학생에게 전과를 받으면 졸업연한 및 졸업학점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은가?

교수지원팀장: 4학년 학생에게도 전과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생에게 졸업 전에도 다른 전공을 이수할 있도록 교육부에서 전공 선택의 문을 열어 둔 조치이다. 이 사안은 필수가 아니며 뒤늦게 새로운 전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임

위원 ○○○: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교수지원팀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계전공은 기존의 학과 커리큘럼은 그대로 두고, 단지 연계전공 과목만 지정 후, 학생들이 연계전공 과목 36학점만 들으면 연계전공 학위를 주는 것이며, 융합전공은 기존 학과와는 별개의 제3의 학과를 만드는 것으로, 단지 기존 2개 혹은 3개학과의 커리큘럼에서 융합전공 과목들을 지정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형태임. 융합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제1전공으로 들어왔지만, 전과를 신청하지 않고 융합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음

위원 ○○○: 혹시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자주 강조하고 이렇게 규정까지 만드는 이유가 대학구조조정과 연계가 있는가? 또한 이렇게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향후 지속적으로 만들게 되면 과연 학과가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보는가?

교수지원팀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학과의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느학과를 없애고, 어느교수를 키워주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아님. 단지, 지속되는 재정지원사업에서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의 규모가 많은 점수를 얻는 면도 있고,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추진 중이라고 이해해 주길 요청드림

위원 ○○○: 전공학점을 39학점으로 낮추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전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현재 42학점도 너무 적은 편인데,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가 궁금함.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가 되겠는가? 다른 대학들은 알아보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교수지원팀장: 현재 정부에서 곧 발표예정인 대학학사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타대학들도 어느정도 이러한 추세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얼마전 수도권 대학들을 조사했을 때에도 현재 전공학점이 36~40학점사이로 과거 교수님들 시대에 비해 많이 낮아짐.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융복합 교육을 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한 전공에 깊이 공부하기보다는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접목시키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 ○○○: 정부 재정지원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에 무조건 발맞추는 것이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접근하고 한 두학기 타 대학의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진행 했음면 함. 위원장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해 주시길 제안함

위원장: 본 안건 3, 4에 대해 규정 개정이 시급하지 않다면 타 대학의 운영사례를 지켜보며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제안받은 바를 심의결과에 반영하는데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받고자 함

위원 ○○○: 현재 시점에서 규정 개정 및 신설이 미루어지면 재정지원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결 전에 재정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획팀장의 의견을 듣고싶음

기획팀장: 현재 ACE+사업 등 올해 예상되는 많은 재정지원사업에 연계전공/융합전공의 신설 및 진행여부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함. 실제로 ACE+사업 및 프로임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학들에서는 10개 이상의 연계, 융합전공이 신설운영되고 있음

위원 ○○○: 그럼, 올해 ACE+ 사업에 도전하려면 이번 학칙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뒤로 미루기보다는 행정부에 연계, 융합전공 규정이 몇몇 개인들에 의해 휘둘러져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음

대다수의 위원들: 그 뜻에 동의를 표함

위원장: 그럼 안건 3, 4(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및 학칙 신설(안) 자문)에 대해서는 융합, 연계

2016-05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17.1.26)

전공 개설관련 어느 개인에 의한 신설 및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제안하기로 함, 더불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가부여부를 거수로 표해주기를 요청함
전체 위원: 거수함

위 원 장: 본 안건 3,4에 대해 위원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단, 융합, 연계전공 개설은 공정하고 어느 개인에 취우치지 않고 모든 교수들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대학측에 요청하는 것으로 자문내용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함.

회의 종료

위 원 장 : 2016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종료를 선언함.

끝 기 도 : 이준태

붙임3.

교직원연봉제 운영 규정

[제정: 2017. 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하는데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 대학교 정규직(연봉제)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외국인 전임교원의 연봉계약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연봉제"란 급여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급여 제도를 의미한다.

②"기본급"이라 함은 연봉 결정의 기준금액을 말한다.

③"성과급"이라 함은 조직이나 개인의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변동성 급여를 말한다.

④"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말한다.

⑤"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때 해당 월 지급액을 1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⑥"초임 연봉"이라 함은 직급별 임용 교직원에 대해 정해진 연봉액을 말한다.

제3조(교직원의 연봉 결정 및 조정)

①교직원의 연봉은 업적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매 학년도 초에 책정한다. 다만, 외국인 전임교원 및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 교직원의 연봉은 자격조건, 경력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최초 임용계약 시 정한다.

제4조(연봉지급)

①교원의 연봉은 본봉 및 연구비로 구성하며, 직원은 본봉으로 한다.

②교직원의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봉 월액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④신규임용, 휴직, 복직 및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사망 또는 면직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⑤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 병가 중의 연봉지급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⑥인사규정에 의거해 휴직한 교직원의 경우 휴직일이 속한 첫째 달은 기본급 전액을, 둘째 달은 기본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초기일이 급여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는 첫째 달은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⑦휴직한 교직원이 복직할 경우의 연봉은 휴직 당시의 기본급으로 결정한다. 단, 대학이 필요에 의해 휴직

을 인정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⑧연구년 교수의 급여는 교원연구년 규정에 의한다. 특히 유급 해외연수의 허가를 얻은 교직원의 연수기간 중 급여는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조(연봉 산정을 위한 업적평가)

①교원의 연봉은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및 정기평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정기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며, 직원의 연봉은 직원 근무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산정한다.

②매년 연봉은 전년도 연봉에 당해년도 연봉인상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연봉인상을 전임교원 및 정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인상을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성과인상률의 합으로 구성되며, 각 인상률은 당해년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학과(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학과 소속교원의 연봉 인상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연봉인상률 및 조정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연봉결정 통보)

제5조에 의하여 연봉이 결정되면 교직원과 별도의 연봉 체결을 하지 않고 연봉 통보로 대체한다.

제7조(연봉 이의신청 및 재계약)

①교직원이 대학이 책정하여 통보한 연봉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대학이 책정한 연봉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연봉 통보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교직원연봉책정위원회)

①교직원연봉책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총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외에 기타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교직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 기준에 의거 연봉 감액 및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정한다.

⑤위원회는 교직원 연봉 이의 신청을 심의하여 조정한다.

제9조(연봉 지급의 제한)

교직원의 휴직, 징계, 직위 해제 등에 해당하는 신분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연봉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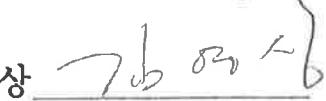
위 원 장

조 치

웅 

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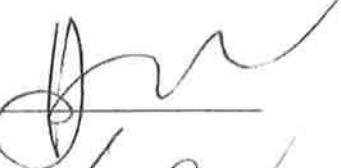
김 영

상 

위 원

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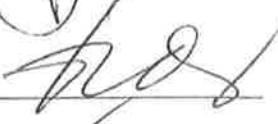
안



위 원

김 철

호



위 원

김 현

희



위 원

오 복

자



위 원

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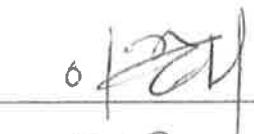
수



위 원

이 준

태



위 원

장 성

일



위 원

조 석

호



위 원

최 준

환

